속초시 고시 제2011-47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
주택법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1. 08. 10.

속 초 시 장

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】

1. 사 업 명 : 장사동 주택건설사업
2. 사업주체
   가. 성명 : (주)대희 대표 한옥수, 소진섭
   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-6 동부썬빌 6층 605호
3. 사업개요
   가. 위　　치 : 속초시 장사동 632-6외 1필지
   나. 대지면적 : 9,010㎡
   다. 건설주택 규모
      - 구분 : 공동주택(아파트)
      - 유형 : 민간분양
      - 연 면 적 : 11,386.0937㎡
      - 건설호수 : 3개동 99세대 부대·복리시설
      - 건축규모 : 84.94㎡(6세대), 84.95㎡(24세대), 84.97㎡(69세대)
   마. 도시계획시설사업
      · 명　칭 : 장사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51호선, 소로2-보1호선)개설공사
      · 사업규모
        - 소로 2-51호선 L=134.4m, B=8.0m
        - 소로 2-보1호선 L=32.3m, B=8.0m
4. 사업시행기간 : 2011.08.10 ~ 2013.08.09
5. 주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사항
   1)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
2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
3)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